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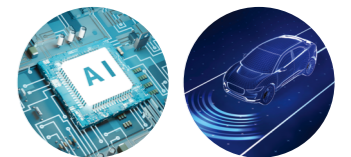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Proposal)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윤명 법학박사
 기술특허법률사무소 연구위원·경희대 법무대학원 겸직교수
 digitallaw@naver.com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은 책임범위의 적극적인 확장이 아닌 제한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나 입법적인 취지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이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또는 결함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EU는 AI를 포함한 SW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확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간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소비자가 EU 외부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마케팅할 때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손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의 증가로 이어졌기에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¹이 제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제조물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다.² 제조물책임의 기본적인 원칙은 과실책임의 전환으로 전문가의 영역에 있거나 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얇은 손해전보가 아닌 깊은 손해의 전보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이다. 제안된 PLD 개정안은 제조물의 정의에 모든 동산 이외에 새롭게 전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하는 디지털 제조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³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작동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 또는 제품 관련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제품은 제조물책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PLD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넘어서 AI의 블랙박스에 따른 책임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AI 책임지침안(AI Liability Directive)⁴, AI 법안(AI Act)⁵, PLD 개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PLD 개정안에 포함된 SW 및 디지털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2022/0302(COD), 28.9.2022

2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p. 1

3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말하며, 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고 끝나는 직선적인 접근(Linear Economy)이 아니라,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을 위한 경제이다. GS 칼텍스 미디어허브, <<https://gscaltexmediahub.com/story/magazine-gscaltex-circular-economy/>> (최종방문일 2022.11.22.)

4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Directive) 2022/0303(COD)

5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0106(COD)

PLD 개정안의 특징

EU PLD의 책임원칙

EU PLD는 제조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른다. 즉 PLD 제1조 목적조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PLD 전문에 무과실책임만이 최신 기술에 내재한 위험의 공평한 분배, 전문성에 대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관계의 성립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결함의 여부만이 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것이라는 점이다.⁶ 이는 EU를 포함한 제조물책임법을 운용하고 있는 각국의 제조물책임법리가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EU 정책과의 일치

EU는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조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기계, 무선기기, 일반 제조물 안전에 대한 규정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믿음만한 AI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PLD 개정안은 제조물이 위해를 일으킬 때,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데 확신할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할 때 직면하는 배상 위험에 대해 사업이 법적 확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EU의 노력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작동하는 디지털전환을 더 잘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AI 관점에서 PLD 개정안은 AI 시스템과 AI 기반 제조물은 제조물이며 따라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AI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제조물과 마찬가지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정안은 하드웨어 제조자들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들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처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조자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한 제조물들을 변경할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기계학습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포함된다. 끝으로 개정안은 AI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사례와 제조물이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례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로써 책임 규칙이 AI에 적용됨을 확실히 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요구에 대체로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대적인 변화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AI에 대한 과실 기반 책임의 AI 책임지침안(AI Liability Directive), AI 법안(AI Act), PLD 개정안 등의 병행 법안은 EU회원국의 국내법 하에서 배상을 받기 위해 AI 시스템이 손해를 야기한 것이 누군가의 과실이라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해야만 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⁶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2, 80면

AI 법(안) 및 AI 책임지침(안)과의 관계

AI 법(안)과의 관계

EU는 2021년 4월 인공지능 규제법안인 AI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AI 시스템의 설계별 로깅 및 사이버 보안 기능을 포함해 높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PLD 개정안은 법원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AI 법(안)에 명시된 것을 포함해 모든 의무적인 안전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PLD 개정안은 AI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이라는 점에서 AI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사망, 개인 상해, 재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상자는 PLD를 이용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PLD 개정안은 기업들이 AI 기술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법적 확실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향후 AI가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장려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AI 책임지침(안)과의 관계⁸

AI 책임지침(안)의 목적은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고 피해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확립하고 AI를 육성하는 것이다. AI 책임지침(안)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도입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때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첫째,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것으로 복잡한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탐색하려고 할 때 특히 어려울 수 있는 특정 결함이나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둘째,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고위험 AI가 관련된 경우 제조자로부터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해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결함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법(안)에서 규정된 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에게 법원은 관련 제품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LD 개정안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제조자의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및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포괄한다. 모든 회원국은 피해자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결함기반 책임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의한 손해와 관련된 경우 제안된 AI책임지침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관련된 AI 시스템의 불투명성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PLD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반 규칙

일반 규칙의 특징은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제조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서

⁷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 (최종방문일 2022.11.22.)

⁸ Questions & Answers: AI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 (최종방문일 2022.11.22.)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제조물의 현실에도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배상이 가능한 손해의 개념을 데이터의 손실 또는 오염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제4조)

PLD 개정안은 제조물의 개념과 유형을 확장하고 있다. 제조물의 개념을 디지털 제조 파일,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사업자까지도 책임 범위에 포함한다. 제조물은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통합돼 있더라도, 모든 동산으로 정의하면서,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⁹ 새로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제조 파일이라 함은 디지털 버전 또는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제조물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요소(Component)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성요소란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제조자의 통제 내에서 또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에 통합돼 있거나 상호 연결돼 있는 여하한 항목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때 관련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돼 있거나 상호 연결돼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손해의 개념에는 Data Governance Act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손실(Loss)이나 오염(Corruption)이

이뤄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데이터의 손실이나 오염은 원래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3의 데이터가 포함됨으로써 원래 의도했던 데이터의 성질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4조

- 제4조
-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통합돼 있더라도, 모든 동산을 의미한다. '제조물'은 전기, 디지털 제조 파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2) '디지털 제조 파일'이라 함은 디지털 버전 또는 디지털 형태의 동산을 의미한다.
 - (3) '구성요소'라 함은,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제조자의 통제 내에서 또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에 통합돼 있거나 상호 연결돼 있는 여하한 항목,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 (4) '관련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돼 있거나, 상호 연결돼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 (5) '제조자의 통제'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자가 a)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합, 상호 연결 또는 공급을 허가하거나 b) 제조물의 수정을 허가함을 의미한다;
 - (6) '손해'라 함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c) 상업적 목적에만 독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오염;
 - (7) '데이터'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규정 (EU) 2022/868¹¹의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 (17)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 (디지털 서비스 법)의 제2조(h)에 정의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⁹ 현행 PLD 제2조 본 지침에서 '제품'이란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종속돼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품'에는 전기도 포함한다

¹⁰ Data Governance Act 제2조 (1) '데이터'는 행위, 사실 또는 정보의 디지털 표현 및 그러한 행위, 사실 또는 정보의 편집물을 의미하며 소리, 시각 또는 시청각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을 관할하는 규정과 자연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의 범위는 EU 영외에서 제조되고, EU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가 EU 영내에 항상 있도록 하고 있다. 순환경제 사업모델과 같이 제조물에 수정을 한 경제적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입증책임의 부담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있으나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손해를 입은 자가 직면한 상황을 비취볼 때 산업계 이익 및 소비자 이익 간에 공평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결함(제6조)

안전성 결여를 의미하는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 결함은 사용 적합성이 아니라 대중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참조해 판단토록 하고 있다. 결함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하며, 특정인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참고로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대중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은 특히 의도된 목적, 해당 제품의 객관적 특징 및 특성, 그리고 제품이 의도하는 이용자층의 특정한 요건을 고려해 평가돼야 한다.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와 같은 일부 제품은 사람에게

특히 손상을 입힐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기준이 특별히 높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법원은 이미 결함이 입증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 계열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결함을 입증하지 않고도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한 제조물 안전 요건과 관련해 SW나 SI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외부적인 해킹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선택의 이익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더 나은 제조물이 시장에 존재한다거나 제조물이 후속 출시가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 제조물이 결함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제조물에 대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제조물의 이전 버전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2]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6조

- 제6조(결함)
- 1. 다음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기대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된다:
 - (a) 설치, 이용, 유지보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제조물에 대한 설명;
 - (b)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제조물의 이용 및 잘못된 이용;
 - (c)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제조물에 미치는 영향;
 - (d) 당해 제조물과 함께 이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제조물이 당해 제조물에 미치는 영향;
 - (e)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됐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시점 또는 그 시점 이후 제조자가 제조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

¹¹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Data Governance Act) (OJ L 152, 3.6.2022, p. 1)

- (f) 안전성 관련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한 제조물 안전 요건;
 - (g) 제조물 안전과 관련해서 제7조에서 언급하는 경제 운영자 또는 규제 당국의 간섭
 - (h) 제조물이 의도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들의 구체적 인 기대.
2. 제조물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 더 나은 제조물이 이미 또는 후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됐거나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유일한 이유만으로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운영자들의 제조물책임(제7조)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EU 밖에 설립돼 있는 경우, 손해배상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수입자 및 제조자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 수입자, 유럽 대리인, 이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통업자들이 EU 내에 기반을 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즉각 식별하지 못할 경우에만 유통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같은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행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들은 해당 경제적 운영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은 더욱 내구성이 좋아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므로 제조물은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제조물이 원래의 제조자의 통제 밖에서 상당히 수정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조물로 간주되며 이같이 수정을 한 자는 수정된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3]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7조

제7조

1.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들은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결함있는 구성요소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있는 구성요소의 제조자들도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제조물의 수입자 및 유럽 대리인이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상기 2에서 말한 경제적 운영자들 중 아무도 유럽연합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이행 서비스 제공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4.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서비스를 개시한 제조물을 수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 그 수정이 관련 제조물 안전에 대한 유럽연합 법 또는 각 개별국가의 규정의 의해 상당하며 원 제조자의 통제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기 1의 목적에 비추어 그 제조물의 제조자로 간주된다.
5. 회원국들은 상기 1에 따라 제조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상기 2 또는 3에 따른 경제적 운영자들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각 유통업자들이 다음의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a) 청구인이 유통업자에게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자 또는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 (b) 유통업자가 상기 요청을 받고 1개월 내에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자 또는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하지 못한 경우.

6. 상기 5는, 소비자들이 거래자들과 원거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며,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디지털 서비스 법) 제6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회원국은, 피고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추정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각 개별 법원은 당사자들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되거나 언급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증거의 공개(제8조)

제조물책임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크다. PLD 개정안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증거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인이 사실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청구인에 대해 증거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8조

제8조

1. 회원국들은 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출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입은 자(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의 법원에게 각 법원의 재량으로 관련 증거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법원들이 상기 1에서 말하는 청구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며 비례의 원칙 내로 증거의 공개를 제한하도록 한다.
3. 공개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각 국가의 법원은 관련 제3자를 포함해, 특히 지침(EU) 2016/943의 제2조 제1항의 의미에 따른 기밀 정보 및 영업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입증책임(제9조)

기술적, 과학적 복잡성에 비춰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은 과학기술의 총아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입증하기에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제조물의 결함 또는 손해와 결함 간의 인과관계, 또는 둘 다를 추정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자가 손해를 입은 자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제조자가 추정을 반박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사안별로 각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AI 시스템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인은 법원으로 해금 입증에 함에 있어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정을 하도록 이를 주장해야 하지만,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청구인에게 입증에 준하는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AI 모델은 블랙박스(Black Box)라는 점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조자는 과도한 어려움의 존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인도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는 위험의 공평한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고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5]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9조

- 제9조**
- 회원국들은 청구인으로 해금 제조물의 결함, 발생한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 제조물의 결함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정돼야 한다:
 - 피고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명령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라는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제조물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유럽연합 혹은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른 법적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경우; 또는
 - 정상적 사용 또는 일반적 상황에서 제조물의 명백한 오작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경우.
 -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당해 결함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 제시된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는 추정돼야 한다.
 - 각 국가의 법원은, 청구인이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또는 이 둘 다를 입증하는데 과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인이 충분히 관련있는 증거에 기반해 다음을 제시하면 제조물의 결함이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또는 두 가지 모두는 추정된다:
 - 제조물이 손해에 기여했고
 -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 결함이 손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인 경우 피고는 상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과도한 어려움 또는 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피고는 2, 3, 4에 따른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책임의 면제(제10조)

‘제조자들의 통제’¹²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은 제조물의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 시점 이후에도 제조자들이 통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또는 머신러닝의 형태로 제조자들의 통제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서비스’¹³의 결과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제조자들은 책임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의 책임에 있어서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거나 제조물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의 결여가 제조물의 결함인 경우에는 경제적 운영자가 해당 결함이 제조물의 출시 시점이나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야 한다. 제조자들은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하는 제조물의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개발위험의 항변으로서 과학적, 기술적

¹² PLD개정안 제4조에 따르면, ‘제조자의 통제’란 제조물의 제조자가 a)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합, 상호 연결 또는 공급을 허가하거나 b) 제조물의 수정을 허가함을 의미한다.

¹³ PLD개정안 제4조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란 합은 당해 서비스가 없는 경우 제조물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에 통합돼 있거나, 상호 연결돼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식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로 판단된 제조자들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상태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그 책임에서 면제된다. 현행 PLD는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면책토록 함으로써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영향평가에서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면책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지됐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기술수준에 대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폐지를 주장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6]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10조

- 제10조**
- 제7조에서 언급된 경제적 운영자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경제적 운영자는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물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유통업자가 제조물을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지 않았던 경우, 그 유통업자;
 -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또는 서비스가 개시됐을 때, 또는 유통업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 결함이 이 시점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공 기관에서 공포한 강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된 때 또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 안에 있던 기간의 제조자의 객관적인 수준의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이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그 제조자;

- 구성요소가 통합된 제조물의 설계 또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구성요소의 제조자에게 교부한 지침으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7조 제1항 두 번째 단락의 결함있는 구성요소의 제조자;
-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수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과 관련된 경우,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을 수정한 자.

2. 상기 1의 (c)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이 제조자의 통제 내에 있는 한,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관련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또는
-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이곳에서는 현행 PLD의 규정에 더해 일반적인 책임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복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3자의 기여행위로 제조자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지만, 손해를 입은 자의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책임이 배제될 수 있거나 제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배상금의 한도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제11조)

다수의 경제적 운영자의 동일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두터운 손해배상을 위해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제조물에 통합시킨 제조자 및 결합 있는 구성요소를 만든 제조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7]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11조

제11조
회원국은 둘 이상의 경제적 운영자가 이 지침에 다른 동일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경감(제12조)

제조물의 결합과 제3자의 책임이 결합된 경우에는 손해가 제조물의 결합 및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결합해 발생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제조물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제적 운영자 외에 개인의 행위 및 부작위가 제조물의 결합에 더해 손해의 원인에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원인에 부주의하게 기여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8]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12조

제12조
1. 회원국은 손해가 제조물의 결합 및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결합해 발생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제조물의 결합 및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자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된 경우,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제13조)

면책조항의 당연 무효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와 관련해, 계약을 통해 그 효력을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LD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나 이용약관에 제조자의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 무효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9]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13조

제13조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른 경제적 운영자의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와 관련해, 계약 조건 또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소멸시효(제14조)

제조물의 특징은 노후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안전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합에 대해 기한에 제한 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그 책임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한 책임의 불합리성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제조물을 재제작한 경우의 시효 기산은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이 해당 안전 요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물이 수정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한 기간은 제조물이 상당히 수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토록 한 것이다. 참고할 수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10]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제14조

제14조
1. 회원국은 이 지침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하는데 3년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 기간 제한은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의 전부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a) 손해;
(b) 결합;
(c) 제7조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관련 경제적 운영자를 식별할 것.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기간 제한을 중단시키거나 간섭하는 회원국의 법률은 이 지침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회원국들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합 있는 제조물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되거나, 제7조 제4항에 따라 상당히 수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지침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 단, 청구인이 그 전에 제7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제적 운영자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 법적 절차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기 2의 예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은 자가 신체 손해의 잠복기로 인해 10년 내에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15년의 제한 기간이 만료될 때 소멸된다.

환경의 차이가 있으며, 큰 변화는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됨으로써 보다 지능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고 있다. 문제는 알고리즘의 블랙박스에 따른 내부적인 처리나 결합이 있어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거나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발자도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리에 따라 인공지능의 결합에 대해서는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충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됐지만, 동일한 대상이 매체 유무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¹⁴ 동 법안에 대한 국회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저장매체(디스켓, CD 등)가 있거나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로부터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및 시사점

디지털전환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시행된 이후,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 등 디지털전환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산업환경과 지금

¹⁴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적고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자체는 물건성이 없어 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현행법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의규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¹⁵하다고 한다.

개정 PLD의 시사점

EU 지침의 개정에서 보듯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물에 대한 정의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차는 물론 많은 영역에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 시대의 제조물책임 원칙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논의는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집중하면서 제조물책임 법리의 본질은 배제해왔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논의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라는 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의 수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배제 등을 통해 제조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 및 운용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면책규정과 연계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EU의 PLD 개정안의 의의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라면 제조물성에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매체성에 따라 소프트웨어나 AI의 성질이 변한 것은 전혀 없음에도, 유형물체의 저장여부에 따라 제조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다.¹⁶ 따라서, 인공지능이 블랙박스화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인간이 확인하거나 제작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¹⁷ 블랙박스 현상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의 진화된 알고리즘은 개발자도 그 성능에 대해 완벽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사고 발생 시 개발 책임자와 그 소속 회사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어렵다”¹⁸고 평가하기도 한다.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은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EU PLD를 포함한 각국의 제조물책임 논의는 제조물성에 치중해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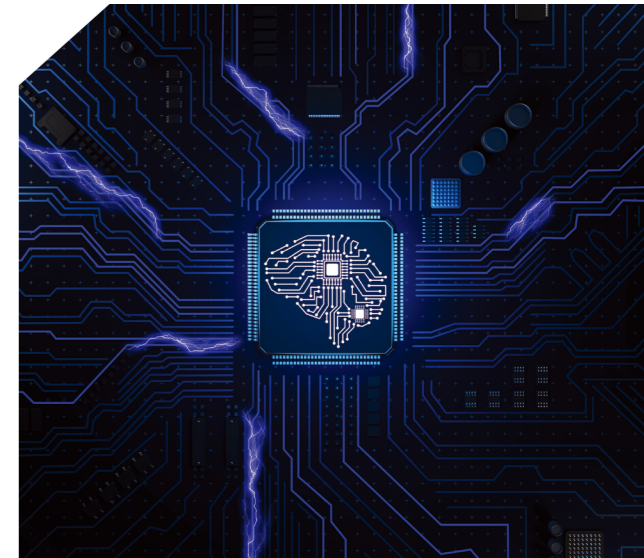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제조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판단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논의는 소비자 보호라는 제조물 책임 법리에 충실하며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 논의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EU역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EU GDPR이 EU역내에 서비스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왔듯이, PLD도 EU역내에 서비스되는 사업자나 제조자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PLD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물의 영역만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와 이들이 융합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EU의 PLD를 포함한 각국의 제조물 책임 논의는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은 제조물 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해왔다. 다만 국내 입법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제조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판단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디지털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안전¹⁹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2
 김윤명,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2
 김윤명·오병철 외, SW제조물책임 관련 법제 현황 조사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김제완,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 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윤지영 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 형사정책연구원, 2015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Evaluation of Product Liability Directive, SWD(2018)157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1
 Questions & Answers: AI Liability Directive, 2022.9.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5793



¹⁹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¹⁶ SW가 “유체물에 담겨져 있다고 함여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제완,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27면
¹⁷ 김윤명,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2, 155면 이하 참조
¹⁸ 윤지영 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 형사정책연구원, 2015, 97면

¹⁵ 오창석,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정무위원회, 2017.11